

평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1999. 10 . 21 평창군수(도시경제과장)

나. 회부일자 : 1999. 12. 20

다. 상정일자 : 제73회 평창군의회(정기회) 제1차조례특위('99.12.21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경제과장 석명준)

가. 제 안 이 유

-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·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함.

나. 주 요 내 용

- 점용허가 할 수 있는 공원에 대하여 규정함(안제3조)
- 점용허가 할 수 있는 녹지에 대하여 규정(안제4조)
- 점용허가 기간 및 점용시설의 철거등에 관하여 규정(안 제5조내지 제6조)
- 점용물의 관리 및 점용료의 납부등에 대하여 규정(안 제7조 내지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허해성)

- 본 조례는 도시공원법시행령이 1999.4.9 대통령령 제16244호로 완화를 목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 대상을 법에 부합되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
1부. 끝 .